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도로과소관 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로법 제35조제1항, 제45조, 제50조, 제80조의2의 관련사무는 1999년 8월 10일 부터 시행 한다.

# 권 한 위 임 사 무

[별표 1]

주관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로과	1	<p>○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p> <p>가. 도로점용 허가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p> <p>나. 점용공사의 확인</p> <p>다. 점용료의 징수</p> <p>라. 점용료의 징수제한</p> <p>마. 원상회복</p> <p>바. 변상금의 징수</p> <p>사. 수수료의 징수</p> <p>아. 과태료 부과징수</p>	<p>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제64조</p> <p>동법 제40조 제3항</p> <p>동법 제43조 제1항</p> <p>동법 제44조</p> <p>동법 제45조</p> <p>동법 제80조의 2</p> <p>동법 제77조의 2</p> <p>동법 제86조의 2</p>
	2	<p>○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다음행위금지에 관한 권한</p> <p>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p> <p>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등의 행위</p> <p>다.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p>	<p>동법 제50조 제4항</p> <p>동법 제50조 제4항</p> <p>동법 제50조 제6항</p>
	3	<p>○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p> <p>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p> <p>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p> <p>다.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p> <p>라.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p>	<p>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p> <p>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p> <p>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p> <p>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p>

주관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4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 가. 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 라.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명령 마.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 명령 바. 도로에 관한 조사 사.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아.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감정,분할측량,보상금지급, 잔여지매입,소유권이전)	동법 제29조 동법 제31조 동법 제54조제1항 동법 제67조 제1항 동법 제75조 동법 제76조의2 동법 제78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 에관한특별법제3조
	5	○ 도유재산(도로)용도폐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7조및 도로법제28조·충청북도공 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 신 구조문 대비 표

헌 행				조 정			
주관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주관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도로과	1	(생 략) 가. 도로점용 허가  나.-다. (생 략) (신 설) <u>라. 위상회복의무의 면제승인</u> (신 설) (신 설) (신 설)	도로법제40조제1항   동법제45조	도로과	1	(현행과 같음) 가. .... 및 원인자 <u>부담금징수에 관한 사무</u> 나.-다. (현행과 같음) <u>라. 점용료의 징수제한</u> <u>마. 위상회복</u> <u>바. 변상금의 징수</u> <u>사. 수수료의 징수</u> <u>아. 과태료 부과징수</u>	도로법제40조제1항 및 제64조  동법제44조 동법제45조 동법제80조의2 동법제77조의2 동법제86조의2
	2	○ ..... <u>다음 각호의 허가 및 조치에 관한권한</u> 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나.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허가 <u>다. 죽목의 재식, 벌채의 허가</u> <u>라.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u>  마.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위험을 예방하기 위한조치	동법제50조제5항 동법제50조제5항  동법제50조제5항 동법제50조제4항, 동법시행령제27조 동법제50조제6항		2	○ ..... <u>다음행위 금지에 관한권한</u> 가. .... 행위 나. .... 행위  (삭 제) (삭 제)  다. .... ..... .....	동법제50조제4항 동법제50조제4항     동법제50조제6항

현행				조정			
주관과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주관과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 (생략) 가.-나. (생략) 다. <u>교량, 도선시설, 지하도, 터널, 삼도의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 징수</u> 라. <u>도로의 구조 보전과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운행 제한</u> 마.-자. (생략) 차. <u>도로면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매수 및 소유권이전)</u>	동법제35조제1항  동법제54조제1항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제3조		4	○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다.-사. (현행과 같음) 아. .... ..... (협의, 감정, 분할추람, 보상금지급, 잔여지배인, 소유권이전)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제3조
	5	(신설)			5	○ 도유재산(도로)용도폐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도로법제28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